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특별기획 3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집필인 | 김자영 한진옥 이지혜 서수인 신소을 이푸름

경기도공공보건정책지원단 공공보건으로 조사연구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종식 시점에 대한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일상을 마주해야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하였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생활방역에서 개인방역 핵심 수칙 등을 공개하였다.

발표된 개인방역 생활수칙을 살펴보면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속한 대상자들은 이러한 생활수칙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개인방역 핵심 수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어려운 집단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01 들어가며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장기화되고 종식 시점에 대한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갈 필요

! 참조

1) '생활 속 거리두기'...두 팔 간격 등 '5대 수칙' 지키세요. 헬스조선. 2020년 5월 4일.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¹⁾.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이전에 논의된 적 없는 새로운 개념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이후 '뉴노멀(New Normal)'에 대한 언급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5월 5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되었다(참고1).

참고1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과 보조수칙 주요내용

●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 핵심 수칙 메시지(안) >

제1수칙	제2수칙	제3수칙	제4수칙	제5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생활방역 보조수칙 주요 내용(요약)

1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의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는 경우와 권장하지 않는 경우
2 환경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 및 공공장소의 환경 소독 방법
3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꼭 외출해야 하는 경우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실천사항
4 건강한 생활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 건강관리, 균형 있는 영양 섭취, 정신건강 대처 등 건강을 위한 실천사항

참조: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05.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를 '코로나19 인식조사'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출입을 자제한다는 응답은 96%, 외식이나 외출 등을 자제했다는 응답 또한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이러한 일상생활 속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경제 및 우리의 가정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우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2) 한국리서치(2020), 코로나19 4차 인식조사(상황 인식, 사회적 거리두기 등).

! 참조

3) 신영전, [세상읽기] 나쁜 바이러스는 없다. (2020.3.4.) 한겨레.

4)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부·자영업자 '일상 정지' 악화, 연합뉴스, 2020년 3월 19일.

5) 한국리서치(2020), 코로나19 4차 인식조사(상황 인식, 사회적 거리두기 등).

6)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5.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02

고려해야 할

취약계층의 범위⁷⁾

7) 김도형, 라정일, 변성수, 이재은(2017)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약자 지원방안.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8) 본고에서는 영유아의 경우, 대부분 보호자에 의한 돌봄이 제공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취약계층의 제도적 지원방안에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감염병은 우리 몸과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찾아간다³⁾. 구로 콜센터 사례를 보더라도, 좁은 공간에 모여 마스크를 쓰지 못한 채 일하던 콜센터의 근무환경 자체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부와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에서 일상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어린이 등 건강 취약집단을 보호하느라 여성·주부의 일상 정지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4차 코로나19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문항에서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취약계층이 평균적인 응답자에 비해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0% 가량 선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⁵⁾. 해당 인식조사에서는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들의 삶에 코로나19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4월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생활방역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개인 방역 수칙 중 제5수칙('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의 실천에 있어서 취약계층(아동/어르신 등)에 대한 지원관리에 대한 질문이 최다로 꼽혔다⁶⁾.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또한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개인방역 핵심 수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어려운 집단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취약계층 사업과 정책을 개발·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에 따라 조각적으로 취약계층이 정의되고 있을 뿐, 취약계층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제시되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전 생활영역에 끼치는 영향의 범위를 고려할 때, 재난약자의 정의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재난약자의 정의를 '고령자(치매, 거동이 어려운 경우 포함)', '장애인', '영유아⁸⁾', '외국인'으로 정의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더불어 경제적, 주거환경 측면에서 취약한 '노숙자/쪽방촌 거주자'들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본인의 삶을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생활서비스, 복지서비스 등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욱 도움을 위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03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수칙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 참조

9)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5.4.),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
례브리핑.

10)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05.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정부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공개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4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⁹⁾. 총 8,747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개인방역 5대 핵심 수칙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적으로 살펴보면, 개인방역 수칙 중 제1수칙(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에 대한 의견개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제1수칙의 실천이 개인, 사회구조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제3수칙(30초 손씻기, 기침은 소매에)의 중요도가 가장 높고, 개인차원 및 사회구조적으로 실천이 쉽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수칙별로 개인이 느끼는 실천용이도 및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에 비해 자원에 대한 접근, 활동 자체에 제한이 있는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실천이 더욱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지자체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수칙별로 우리가 나열한 취약계층이 해당 수칙을 이행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차례대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니다”¹⁰⁾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 혹시 있을지 모르 코로 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칙별 행동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며 3~4일간 쉬니다. • 증상이 있으면 주변 사람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특히 고령자·기저질환자와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자제합니다. •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 병원 또는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할 때에는 꼭 마스크를 씁니다. • 기업, 사업주 등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출근하지 않게끔, 또는 집으로 돌아가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플 때,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것이 사회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천하기 어려운 수칙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내국인에 비해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 특별히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열이 나는 상황에서 일을 쉬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실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휴가는 제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고용주에게 보장/보상하는 방식으로

! 참조

1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돼 검진을 받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 상태임.

12) 고용노동부(2020.4.6.) 코로나 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8판).

접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검사가 필요할 때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검사, 동선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¹¹⁾.

비단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본고에서 정의한 취약계층 중 일부는 발열 체크, 실내 이동과 같은 활동 자체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체온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열 체크 등의 직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표1 제1수칙과 관련된 취약계층 지원방안

대상	제한점	지원방안
외국인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움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가벼운 초기 증상인 경우 쉬기 어려울 수 있음 현재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¹²⁾ 등의 지급은 보건 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노동자 출근 시 발열 체크 후, 열이 있는 경우 휴식 이행여부 모니터링 이와 더불어 발열에 따른 예방적 차원의 휴식으로 인한 공백에 대한 지원금 제공(사측)
노숙자/ 쪽방촌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열 체크 등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 등에도 어려움이 있음 안정적 일자리에서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파서 쉬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온계 지원 발열 체크 등의 (생활)서비스 지원(방문, 상담소, 지원센터) 소득 보전을 위한 특별 지원금 제공(개인)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열 체크 등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 등에도 어려움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온계 지원 발열 체크 등의 (생활)서비스 지원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열 체크 등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 등에도 어려움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온계 지원 발열 체크 등의 (생활)서비스 지원

13)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05.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제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둡니다”¹³⁾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를 2m 이상 두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칙별 행동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의 거리, 아무리 좁아도 1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경우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합니다. 만나는 사람과 악수 혹은 포옹을 하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근무환경 및 주거환경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밀집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제조업 분야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나 충분한 간격을 두고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이 주거하는 환경 또한 기숙사, 인구가 밀집된 환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분산·방역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숙자·쪽방촌 거주자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쉼터나 거주지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철저한 소독·방역이 이루어지게끔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의 경우, 개인 차원의 노력만으로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표2 제2수칙 관련 취약계층 지원방안

대상	제한점	지원방안
외국인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산업별 특성상 좁은 공간에 밀집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됨. 이러한 근무 환경은 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이들의 주거환경 또한 기숙사 등과 같이 밀집된 환경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노숙자/쪽방촌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쪽방촌 거주자의 경우, 타 주거시설에 비해 밀집된 경향이 있음. 이러한 환경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 개선

! 참조

14)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05.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제3수칙: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 할 때 옷소매로 가립니다”¹⁴⁾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침예절을 지켜 침방울을 통한 전파도 최소화합니다.
수칙별 행동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개인·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안 좋다고 생각되면 다른 이들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제3수칙은 다른 수칙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천하기 용이한 수칙으로 인식되지만, 취약계층 대상자 중에는 활동 자체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떠한 대상자들보다도 마스크 확보와 방역 용품의 공급이 중요할 수 있다. 신체적 제약, 신분상의 제약에 의해 필요한 물품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들이 속한 지역·공동체에 추가적인 마스크·방역 물품들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3 제3수칙 관련 취약계층 지원방안

대상	제한점	지원방안
외국인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차원의 공적마스크 공급은 최근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문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마스크 및 방역물품 제공 다양한 언어로 생활방역지침 별도 안내, 홍보
노숙자/ 쪽방촌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해진 거주지가 없는 노숙자나 쪽방촌 거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중화장실, 지역커뮤니티 센터 등과 같은 공용 장소에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및 방역 물품 제공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수칙 실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스크 및 방역 물품 제공 공동시설 거주 장애인의 경우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수화, 점자 등의 방식으로 생활방역지침 안내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해 수칙 실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스크 및 방역 물품 제공

참고2 제3수칙 관련 지자체 지원 예시

● 서울시 방역물품 대책본부 가동 및 ‘찾아가는 마스크 지원사업’¹⁵⁾

: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방역물품 대책본부를 구성하였다. 해당 본부는 5개단, 6개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우선적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스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쪽방 상담센터가 서울시 내 5개 쪽방촌을 직접 방문하여 1만 5천개의 마스크를 직접 전달하였으며, 라이더유니온, 퀵서비스 노동조합 등 이동 노동자 단체에도 마스크 4만 6000개를 지원하였다. 향후에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마스크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안산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마스크 배포¹⁶⁾

: 안산시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적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면 마스크 2만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의 경우 초기에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어야 살 수 있었으나, 4월 20일부터 마스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을 지참하면 구매가 가능하게끔 규제가 완화된 상태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여건 등의 제약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외국인 주민(불법체류자 포함)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주민본부와 중국 동포 중심으로 이뤄진 안산시 귀한동포연합회 등을 통해 총 2만개의 면 마스크를 지원하였다.

참조: 15) [코로나19] 서울시, 쪽방촌에 마스크 1.5만개 지원, 뉴스핌, 2020년 3월 8일.

16) ‘마스크 살 수 없는 외국인’ 안산 외국인주민본부서 마스크 받으세요, 중앙일보, 2020년 4월 27일.

! 참조

17)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05.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합니다”¹⁷⁾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출 수 있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을 수 있는 곳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칙별 행동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환기합니다. 환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놓습니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은 주 1회 이상 소독 합니다. •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은 손이 자주 닿는 곳(승강기 버튼, 출입문,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과 공용 물건(카트 등)을 매일 소독 합니다. • 소독을 할 때는 소독제(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에 따라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준수(용량과 용법 등)하여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여러 제약으로 인해 직접 환기·소독 등의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방문소독/방역과 같은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지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 노숙자의 경우, 소독 관리 등이 용이한 곳을 중심으로 임시 쉼터를 제공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

표4 제4수칙 관련 취약계층 지원방안

대상	제한점	지원방안
외국인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환경 및 주거환경이 지나치게 밀집되어 열악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주거지 등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기숙사 등의 방역
노숙자/ 쪽방촌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자의 경우, 정해진 주거지 자체가 없어 노상에 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쪽방촌 거주자의 경우, 밀집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철저한 방역/소독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자 임시 쉼터 제공 및 관리 • 방문소독/방역 서비스 제공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방역 활동 자체에 제약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소독/방역 서비스 제공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방역 활동 자체에 제약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소독/방역 서비스 제공

참고3 제4수칙 관련 지자체 지원 예시

● 안산시 스마트허브 근로자 기숙사에 방역물품 지원

: 안산시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스마트허브)의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였다. 기숙사 시설은 좁은 곳에서 근로자들이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쉽지 않으므로 코로나19 집단발생의 사각지대로 우려가 높았다. 시에서는 지속적인 관례체계를 유지하고, 방역자원을 통해 발생 방지를 위해 최우선으로 살필 예정이다.

참조: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사각지대 없앤다, 뉴트리션, 2020년 5월 4일.

! 참조

18)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05.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합니다”¹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는 나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다.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칙별 행동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는 등 마음으로 함께 할 기회를 만듭니다.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생각하고, 코로나19 환자, 격리자 등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반대합니다.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고, 실천합니다.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정확하지 않은 소문은 공유하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쪽방촌 거주자나 장애인, 고령자는 평소 지원되던 자원봉사, 직접 서비스 지원,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립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5 제5수칙 관련 취약계층 지원방안

대상	제한점	지원방안
외국인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소 접근가능하던 서비스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단절되었음 이에 따른 심리적 고립이 우려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방역
노숙자/쪽방촌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소 지원되던 자원봉사,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립으로 연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방역(안부전화 등)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소 지원되던 자원봉사, 직접 서비스 지원,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립으로 연결됨 심리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거동, 상황 판단 등이 어려워 생활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서비스 지원 인력 확보 및 관리 심리방역(안부전화 등)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소 지원되던 자원봉사, 직접 서비스 지원,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립으로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방역(안부전화 등)

참고4 제5수칙 관련 지자체 지원 예시

●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운영

: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감염 환자, 자가격리자, 의료진 등 대상별 맞춤형 인정 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수어통역을 함께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였다.

참조: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발족...심리방역 위한 마음백신 7가지 제시, 뉴스신, 2020년 3월 4일.

04

그 외

고려해야 할 사항

! 참조

19)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5.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 시민건강연구소(2020), 재난 거버넌스와 민주적 공공성.

21) 시민건강증진연구소(2016), 인권 중심의 위기대응: 시민, 2015 메르스 유행을 말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전에 없던 강력하고 포괄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신종감염병 대응의 전반에 걸쳐 취약계층을 고려하고 배려하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일반적이고 시급했던 대책이 수립된 이후, 빈틈을 메우는 식의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5월 초 국가결핵검진사업과 코로나19 검사를 연결하는 방식의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기는 하였지만¹⁹⁾, 이는 본격적인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이후에 이루어져 다소 대응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와 더불어 감염병 발생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²⁰⁾, 현재 국내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는 이러한 논의는 빠져있다. 또한 감염병을 대응하는 단계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이 직면한 전반적 어려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논의·평가하는 노력 등이 더해질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다.

본고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개인방역 수칙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지원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의료이용 및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²¹⁾. 특히나 노숙자이나 쪽방 거주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위기 상황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용 가능한 의료안전망조차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들은 정해진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대개 공공병원이 해당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병원들이 감염병 환자를 주로 받게 되면서, 이들이 의료서비스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들을 위한 또 다른 대응책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 참조

22)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2020), Strengthening and adjusting public health measures throughout the COVID-19 transition phases: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 WHO European Region.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일일상황 분석보고서 70호 번역 참조)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되었다. 발표된 개인방역 생활수칙을 살펴보면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외국인 노동자, 노숙자/쫓방촌 거주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속한 대상자들은 이러한 생활수칙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취약한 이들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우리 사회 구조 전반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는 중요하다. 4월 24일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에서 발표한 ‘COVID-19의 변화 국면에 따라 공중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조정하는 법: WHO 유럽지부를 위한 정책 제안’에서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써 사회구조 강화를 고려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²²⁾. 튼튼한 사회 구조를 통해 사회의 응집성과 참여를 강화시키며, 뒤처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도울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와 사회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 시민들의 건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개인방역 수칙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감염병 대응 단계의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중앙 및 관련 지자체에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현황 모니터링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의 새로운 일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고려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뿐 아니라 감염병 대응의 모든 단계에서 더 많은 제한점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장, 감염병의 확산을 막으며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생활 속 거리두기부터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고용노동부(2020.4.6.),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8판).

김도형, 라정일, 변성수, 이재은(2017),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약자 지원방안.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마스크 살 수 없는 외국인’ 안산 외국인주민본부서 마스크 받으세요, 중앙일보, 2020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5.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5.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생활 속 거리두기’...두 팔 간격 등 ‘5대 수칙’ 지키세요. 헬스조선. 2020년 5월 4일.
서울시, 쪽방촌에 마스크 1.5만개 지원, 뉴스핌, 2020년 3월 8일.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발족...심리방역 위한 마음백신 7가지 제시, 뉴스신, 2020년 3월 4일.

시민건강연구소(2020), 재난 거버넌스와 민주적 공공성.

시민건강증진연구소(2016), 인권 중심의 위기대응: 시민, 2015 메르스 유행을 말하다.
신영전, [세상 읽기] 나쁜 바이러스는 없다, 2020년 3월 4일, 한겨레.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부·자영업자 ‘일상 정지’ 악화, 연합뉴스, 2020년 3월 19일.

한국리서치(2020), 코로나19 4차 인식조사(상황 인식, 사회적 거리두기 등).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2020), Strengthening and adjusting public health measures throughout the COVID-19 transition phases: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 WHO European Region.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일일 상황분석보고서 70호 번역 참조)



해당 이슈브리핑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집인 | 한진옥(조사연구팀 책임연구원) 문의 | 031-738-0281